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9. 6. 18. 시행) ◆

1. 대체가능시험

-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3)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37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4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375점 이상

3.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사전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에서 정하는 인정기간 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함. [단, 플렉스(FLEX)는 성적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불필요]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폴 :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가능

5.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추가로 등록 해야 함
[추가등록 기간 : 2021.10.11.(월)~10.15.(금)]

6. 유의사항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붙임 참조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과목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19. 11. 5. 시행) ◆

1. 대체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4)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성적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시험일자 등 입력
 -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추가로 등록 해야 함
[추가등록 기간 : 2021.10.11.(월)~10.15.(금)]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 인 사람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 인 사람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시험별 제출 기준 점수

구분	토플(TOEFL) PBT	토픽(TOEIC)	텡스(TEPS)		플렉스(FLEX)
			'18.5.12. 전 시험	'18.5.12. 이후 시험	
7급 공채	352점	350점	375점	204점	375점

3. 제출서류 등

- 가.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 나.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다.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②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③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제출) 응시자 → 각 시·도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 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표시 예시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나. (대상 확인) 각 시·도 → 응시자

-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공고)** 예정

다. (인정 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 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